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4일, 고동진의원 등 14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0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9.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고동진의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법률 제15828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561건의 승인 건수 및 1.8조원 이상의 매출·투자 성과 창출 등 양적 성과를 거두고 규제 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6년차를 맞이하며 혁신성 높은 신규과제 감소, 규제정비 지연에 따라 실증 단계에서 종료되는 과제 발생 가능성, 특례승인 후 행정·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실증 모델 사업화의 어려움, 특례범위 이외의 제품 판매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공백 등 한계점 또한 발견됨.

따라서 혁신적인 과제를 신속·유연하게 추진하도록 특례 프로세스를 개편, 규제개선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사업 개시·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업부담 완화, 시장·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례과제의 사후관리 강화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혁신·투자 동력을 제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규제 정의 및 특례 부여시 국가·지자체의 협조 의무

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을 준용하여 “규제”에 대해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제7호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과제에 대해 그 취지에 따라 규제적용 예외 또는 허가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6. (현행과 같음) 7.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정규제를 말한다.
7. ~ 9. (생 략)	8. ~ 10.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3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제3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② ---------- 강구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예외하거나 허가등을 하여야 ---.

현행 「산업융합 촉진법」은 산업융합 촉진을 위해 기업 등에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1] '규제'에 대한 명시적 정의가 없어 현장에서 관계기관의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규제(이하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음.[2]

---

1) 규제특례 번호

2)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이에 규제특례 대상에 조례·규칙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특례가 적용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어 승인된 과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3)]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규제 또한 동법상 특례 대상이 되는 규제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협조를 유도하여 특례사업의 신속한 사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변경

개정안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 제한지역(축사와 주거지의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 시 특례 법령으로 가축분뇨법과 조례를 모두 포함하였고 환경부·농림부는 악취저감시설 설치시 이를 완화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하였으나, 지자체가 조례 개정에 협조하지 않아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⑤ (생 략)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위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 사람이 ----.

현행법상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조직으로[4],

동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외에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총 25명 이내로 구성되

4)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2.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가표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7.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제10조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보고한 사항
8.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10.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 있음.

현행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위원회 운영상에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른 일정 등으로 인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부처의 차관이나 민간전문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통상 업무에 있어서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통상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입법례인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경우 해당 규제특례심의회의 위원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법률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인 특정 위원회의 업무대행을 차관이 수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규제특례·임시허가 사업의 기획·공모

개정안은 기존에 개별기업 신청을 전제로 규제특례를 심의하는 절차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례사업을 기획·공모하는 방식(이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6제1항 단서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신산업을 창출·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특례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

현 행	개 정 안
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신산업을 창출·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만 특례 여부 및 내용을 심의하고 있음.[5)]

그러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동일·유사과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혁신적인 규제특례 과제 발굴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를 기업이 신청이 있을 때마다 건건이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업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

5)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이하 생략)

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제적으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제안하여 실증 사업자를 모집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부터 자율운항 선박, 인공지능, 첨단로봇, 액화수소 등 분야에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시범)도입하였고, 특히 자율운항 선박은 대형선박이 연안에서 세계 최초로 원격운항 실증에 성공하는 성과를 창출한 바 있음.

이렇듯,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래 전략산업이나 시장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 등의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규제를 미리 개선할 수 있다면,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라 보임.

4. 동일·유사 과제의 심의 절차 간소화 등

개정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관련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과제 신청이 있는 경우 ①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안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하고, ②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전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0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⑨ (생 략) ⑩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생 략)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관의 조정 3.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조정·처리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⑪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⑦ (생 략) <신 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⑦ (생 략)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

현 행	개 정 안
	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⑭ (생 략)	⑨~⑮ (생 략)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 ⑥ (생 략)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 ⑥ (생 략)
<신 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

현 행	개 정 안
	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⑮ (생 략)	⑧~⑱(생 략)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산업융합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기간·규모·구역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 법령에 해당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맞는 허가의 기준·요건이 없거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6)]

‘임시허가’는 안전성 등의 검증이 완료된 산업융합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법령 정비 이전에 임시로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 관련 허가의 기준·요건이 없거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7)]

---

6)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7)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회신하며, 산업통상부자원부장관은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내용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8]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여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됨[9].

개정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관련하여 이미 승인된 과제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 신청에 대해서는 일종의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신설하여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승인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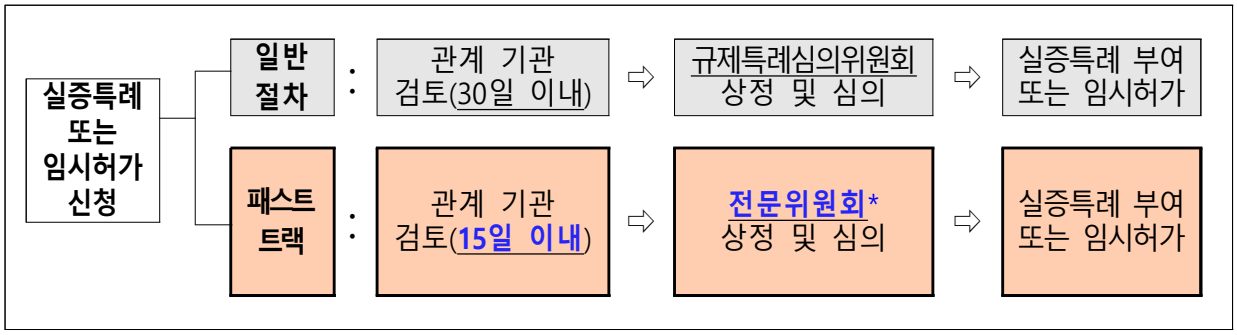

* 전문위원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8)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 제10조의6(임시허가) 규정도 이와 동일함

2024년말 기준(누적),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중 동일·유사과제 비중은 68.8%로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10]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 12인 및 민간위원 12인으로 구성되는데, 연 5회 정도 개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11] 유사·동일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대신 실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위원회[12]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면 관계 기업이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임.

5.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등

개정안은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 이하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특례는 4년 이하, 임시허가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10)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중 동일·유사과제 비중 ('24년말 기준)

	'19	'20	'21	'22	'23	'24	계
총 안건	39	63	96	129	160	222	709
동일 유사(비중)	6(15%)	29(46%)	48(50%)	88(68.2%)	133(83.1%)	184(82.9%)	488(68.8%)

11) 최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 실적

구분	'19	'20	'21	'22	'23	'24	합계
규제특례 심의위원회(건)	6	5	6	4	4	5	30
전문위원회(건)	20	24	29	16	13	11	113

12) 산업부 1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규제내용에 따라 규제부처, 신청기업, 각 기관별 추천 전문가 등 실무급 책임인력이 참여함

임(안 제10조의3제11항 및 제10조의6제10항).

아울러, 규제특례 승인과제 관련 규제법령이 정비되었으나 시행 전이거나 개정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특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안 제10조의5제8항 및 제10조의6제15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⑨ (생 략)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삭 제> ⑪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8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규제특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⑫ ~ ⑭ (생 략)	⑫ ~ ⑭ (생 략)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 ⑦ (생 략)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⑧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⑧ 제10조의3제9항----------.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⑧ (생 략)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 ⑨ (생 략)
<신 설>	⑩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7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현 행	개 정 안
	있다.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⑩ ~ ⑬ (생 략)	⑪ ~ ⑭(생 략)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⑮ ---------- 정비된 ----------.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⑯ ~ ⑱ (생 략)

현행법은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규제특례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13], 임시허가는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13)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하고 있음.[14] 즉,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가능함.[15]

다만, 현실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거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안은 규제특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중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국민안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새로운 기준 마련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등)에 규제특례 유효기간은 4년 이하, 임시허가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16]

에너지 관련 신사업 등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장기간의 실증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2년의 유효기간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다만, 유효기간의 확대가 해당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작용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4) 제10조의6(임시허가)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15) 다만 임시허가의 경우,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법령 정비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의 연속성은 유지됨

16) 기한연장을 포함한 유효기간은 규제특례의 경우 최대 6년, 임시허가는 최대 5년이 가능함.

할 수 있고, 단기간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 법령정비 필요성 입증이 가능한 과제까지 불필요하게 시험·검증기간이 장기화되어 규제법령 정비가 더욱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한편, 허가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현행은 특례 부여 후 관련 규제법령 정비 시 특례 사업자는 지체없이 새로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특례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으로, 정비 규제법령이 시행 전 또는 정비된 법령에 따라 사전 허가취득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특례 유효기간이 도과할 경우 해당 특례는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별도의 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정비된 법령에 따라 사업요건 취득 여부 결정시까지 특례사업의 유효기간을 인정하여 사업 연속성의 불합리한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이는 특례 취지에 따라 규제법령이 정비되었음에도 관련 준비기간 중에 특례 종료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현행법 공백을 보완하는 규정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6. 특례 관련 법령정비 의무 강화 등

고동진의원안은 실증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하여 각각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안은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지체없이’ 관계법령의 정비를 착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4제6항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고동진 의원안	김정호 의원안(6057)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④ (생략) 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현 행	고동진 의원안	김정호 의원안(6057)
	은 제5항에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⑦ ~ ⑫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 ⑪ (생 략)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 ⑫ (생 략) ⑬ ----------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 법령을 정비----------.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규제특례의 경우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련 법령 정비

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하고, 임시허가의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정식)허가를 위한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음.[17]

그러나, 실제로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있거나 임시허가의 부여로 인해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법령 정비에 "착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련 검토 작업만 하고 실제로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실증 규제특례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임시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즉시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령 정비의 신속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은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위한 법령 정비 시기를 앞당기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규제특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2024년 말 기준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과제 635건에 대한 법령 정비 실적을 보면 85건만이 법령 정비되었으며,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56건의 과제 중 법령 정비가 완료된 과제는 8건에 불과한 등 법령

17) 국무조정실은「규제샌드박스 운영 가이드라인('23.3월)」에 따라 규제기관이 규제특례 종료 6개월전 까지 안정성 검증계획, 검증 완료 후 60일 이내 법령정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정비 성과가 미흡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참고로, 동 법과 유사한 실증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허가기준의 법령 정비에 대하여 개정안과 같이 법령을 정비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18)]

7. 규제특례 등의 취소사유 추가 및 제품의 회수·폐기명령 등

개정안은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가 취소사유로 '사업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및 '거짓·과장·기만 등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10조의4제7항 4·5호 및 안 제10조의7제1항제3·4호),

규제특례 등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 시 이미 판매·이

---

1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임시허가)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후단 생략)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6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되면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90조(임시허가) ⑨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후단 생략)

용 또는 제공된 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안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1항 등),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제3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⑤ (생 략)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⑥ (생 략)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⑦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⑦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 중인 제품에 대

현 행	개 정 안
	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 설>	⑩·⑪ (생 략)
⑧ (생 략)	⑫ (생 략)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① ---------- 제10조의6제8항----------.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임시허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과태료) ① ----------.

현 행	개 정 안
1.~ 2.(생 략) 3. 제10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4.·5. (생 략) ② (생 략)	1.~ 2.(생 략) 3.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회수·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서, 취소된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음.[19]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취득한 경우, ② 안정성 관련 부가조건 또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규제특례만 해당)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

19)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의6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규제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고도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를 지연하거나,[20] 거짓·과장·기만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고, 규제특례 등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판매・제공되어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조치 관련 규정이 없어 시장 및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개정안은 사업개시 지연과 규제특례·임시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를 하는 과제에 대해 취소 또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소된 신제품·서비스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승인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안전 및 시장질서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하게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에도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도 실증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1]

---

20)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받은 과제는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한 부가조건을 이행하거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개시전 장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나, 장기간 특례승인 광고를 위한 고의적 사업미개시, 기업의 사업의지 부족, 인력퇴사 등 타당한 사유없이 사업개시를 지연하는 사례도 다수 있다고 함.

2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에 더하여 '유효기간 종료'의 경우에도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을 금지하고 회수·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8. 규제특례 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취소

개정안은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규제특례 부여 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5. 임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제49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 본다.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조치·취소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4.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10항 및 제10조의6제16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⑦ (생 략) <신 설>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⑨ (생 략)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조건 및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⑧ (생 략)	⑪ (생 략) ⑫ (생 략)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 ⑭ (생략) <신 설>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⑪ (생략) ⑯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6항에 따른 조건 및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현 행	개 정 안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⑰ (생 략)
⑮ (생 략)	⑱ (생 략)

현행법에는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한 이후 그 내용 또는 부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나 절차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 과제 사업자가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검토·조정하여 규제특례 확인서 상의 내용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고 있음.

개정안은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특례 내용 및 부가조건을 변경·취소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실무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과제를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을 겪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9.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등

개정안은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관련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11항 및 제10조의6제17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⑦ (생 략) <신 설>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⑨ (생 략) ⑪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⑫ (생 략)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 ⑭ (생략) <신 설>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⑪ (생략) ⑰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생 략)	⑱ (생 략)

현행법은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성과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나 규

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대한상의가 기업을 방문하거나 전화·메일을 통해 성과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다만, 지원기관이 전화·메일을 통해 사업추진현황·애로사항을 월별로 확인하고, 매출·투자·고용 등 사업추진 성과를 분기별로 모니터링 하는 것만으로는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과제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개정안에 의할 경우, 과제 수행기업의 사업 성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적정한 특례사업 규모, 신산업 파급 효과, 특례·법령정비에 따른 기업성장 등 제도운영 성과를 체계화하고 이에 근거한 개선 시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사업개시일부터 유효기간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기한 내 제출 횟수 등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 성과보고서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을지 우려되므로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연구개발혁신법」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제출하도록 하여 정부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음.[22)]

10. 연구개발 및 기술금융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을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및 기술금융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①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생 략)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제,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다음 각 호의 비용---. 1. 연구개발 2. 기술금융 및 판로의 확보 지원 3. 그밖에 과제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⑥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 추진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의 규제특례 승인과제 중 일부에 대해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23)]

다만, 규제특례 승인과제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펀드 조성 등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신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관련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승인과제의 사업화 비용 등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성공적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에 175억원 규모의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 펀드[24)]를 신설하였고, 2025년도 예산으로 규제샌드박스 전용 R&D인 규제특례신산업창출사업(20억원)[25)]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바, 이러한 사업들의 안정적 시행을

23) 2025년도 책임보험 및 실증특례사업 지원비는 2억 2천만원(44건)과 18억원(15건)임.

24) **<규제샌드박스 전용펀드>** 개요

o (목적)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신속한 신제품·서비스 시장출시를 지원하여 샌드박스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

o (규모·기간) 175억원(국비 100억, 민간 75억), '24년~'31년(4년 투자, 4년 회수)

o (주요 투자분야) 인공지능, 로봇/모빌리티, 헬스케어, 기후테크

o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 투자현황('25.2월 기준)

구분	기업명	규제샌드박스 승인 내용	투자금액
1	패00	철도차량용 액화수소 엔진개발을 위한 조합 시험	10억원
2	아000000	화재감시 및 학생범죄 예방용 드론 자동운영 시스템	10억원
3	옵000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용 웨이퍼 레벨 옵틱스	11억원
계			31억원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라 보임.

11. 손해배상 청구권 압류 금지

개정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현행법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책임보험 가입 의무,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26]

25) <규제특례 신산업 창출(R&D)> 개요
- o (내용) 세계·국내 최초 실증 시도인 규제특례 기술에 도전·혁신적 R&D를 지원하여 차세대 융합 신기술 확보 및 신시장 창출·선점
- o (사업기간·예산) '25년 ~ '29년 / '25년, 20억원
- o (수행주체) 주관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및 참여산학연 등
- o (지원조건) 자유공모 / 과제별 최대 3년간* 연 8억원 내외 지원
  - * 민간투자 유치 성공 시 지원기간 최대 3년, 투자 미유치 시 최대 2년 간 지원

26)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다만, 현행법은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27] 행정안전부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된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를 통해 산업융합, ICT 등 규제샌드박스 책임보험에 양도·압류금지 조항을 도입하여 책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또는 압류금지 규정을 마련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⑩ 사업자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생 략)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7.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하여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충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손해배상청구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양도 및 압류가 금지될 수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12. 적극행정을 위한 포상 및 면책규정 신설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안 제35조의2 신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

	정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 설>	제35조의3(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규제특례의 부여나 임시허가 등의 업무를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규제개선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법률」[28] 등 다양한 개별법률에서 동일한 내용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음.[29].

현행 「감사원법」 제34조의3[30]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31]에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일반적 근거 규정을 두고 있

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8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9) 그 밖에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등

30)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으나, 개별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면책규정을 둔다면 관계 공무원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정부가 제출한 동일 내용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2185호, 2024.7.24.)'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하여야 할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